

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7. 31.

파 주 시 장

- 1. 공고내용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 2.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4.(15일간)
-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등
-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위반법규        | 반송사유 |
|--------------------------------|-----|---------------------|-------------|------|
| 파주시 야당동 62-35번지,<br>1207동 402호 | 진○미 | -불법 증축(55㎡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 031-940-49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